

월드비전 꿈꾸는아이들 파트너십사업 계약서

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(이하 “월드비전” 이라 한다)과 “김해시구산사회복지관(이하 “파트너십기관” 이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 파트너십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.

- 사업명 : 월드비전 꿈꾸는아이들 사업
- 지원금 : 총 금오천칠백만원정(₩57,000,000)
 - 2023년 - 금일천구백만원정(₩19,000,000)
 - 2024년 - 금일천구백만원정(₩19,000,000)
 - 2025년 - 금일천구백만원정(₩19,000,000)
- 사업기간 : 2023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

제1조(계약의 목적) 본 계약은 “파트너십기관” 이 “월드비전” 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정의) 본 계약에서 “지원금” 이라 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“월드비전” 이 “파트너십기관” 에게 지급하는 “월드비전” 의 모금재원을 말한다.

제3조(용도의 제한) “파트너십기관” 은 지원금을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

제4조(공익추구·비정치·비영리의 원칙) “파트너십기관” 은 공익추구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사업이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영리적 활동, 선교활동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활동을 배제하여야 한다.

제5조(회계) ① “파트너십기관” 은 지원금에 관한 예금통장과 회계장부를 “파트너십기관” 의 다른 계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개설 및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 “파트너십기관” 은 지원금의 모든 지출에 대한 기록과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.

③ 지원금에 관하여 예금통장에 기재된 내용과 회계장부상의 지출액, 지출결의서 등 관련 제반 증빙서류는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금의 조정 및 제재조치)

① “월드비전”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“파트너십기관” 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중단, 기 지급한 지원금 환수, 일정기간 배분지원 대상 제외 및 계약 해제/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이를 유관 지원 단체

및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.

1. 지원 이후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으로 판명된 경우. 다만, “월드비전”이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2. 본 규정 제 4조에 있는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거나, 정치나 영리, 선교 등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.

3. “파트너십기관”이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
4. “파트너십기관”이 정당한 이유 없이 “월드비전”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, 조사 및 평가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,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허위나 거짓된 내용이 있는 경우

5.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6. “파트너십기관”의 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

7. “파트너십기관”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

8. “파트너십기관”의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

9. 기타 “파트너십기관”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원만한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10. “파트너십기관”이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은 회계정산보고서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.

② “월드비전”은 제1항에 의한 조치를 하기 전에 “파트너십기관”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③ “월드비전”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“파트너십기관”은 즉시 지원금을 “월드비전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④ “파트너십기관”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꿈꾸는아이들 꿈디자이너 사업에 참여하는 아동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아동 수 변동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될 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.

⑤ “월드비전”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상호 협의 하에 “파트너십기관”에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금의 지급보류) “월드비전”은 “파트너십기관”에게 제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경우 미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조사기간 동안 지원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.

제8조(사업계획의 승인 등) ① “파트너십기관”은 사업 시행 전에 사업계획(사업기간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작성하여 “월드비전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“파트너십기관”은 제1항에 의하여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“월드비전”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“파트너십기관”은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즉시 “월드비전”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.

제9조(연락처 등 통지의무) ① “파트너십기관”은 본 계약 후 즉시 사업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통지가 가능한 연락

처(전화번호, 주소, 이메일, 담당자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정확하게 “월드비전”에게 고지하여야 하며, 모든 통지는 “파트너십기관”이 고지한 연락처로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.

② 제1항의 연락처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“파트너십기관”은 즉시 이를 “월드비전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“파트너십기관”은 사업장을 폐쇄한 때에는 즉시 이를 “월드비전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폐쇄당시 미사용한 지원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지원금(현물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을 포함한다)의 처리방안 등에 관하여 “월드비전”에게 알리고 “월드비전”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.

제10조(관리운영) ① “파트너십기관”은 지원금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관계법령·조례 및 규칙과 본 계약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금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“파트너십기관”이 이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“파트너십기관”은 지원금을 사용 또는 이용한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, 이에 대비하여 “파트너십기관”의 책임 하에 참여아동에 대한 단체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.

제11조(민·형사상의 책임 등)

① “파트너십기관”은 사업 수행 및 지원금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“파트너십기관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·사고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“월드비전”을 면책한다.

② “파트너십기관”은 제1항의 사건·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경우 “파트너십기관”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, 이를 회피하거나 “월드비전”에게 배상 요구 또는 구상권 행사 등을 할 수 없다.

③ “파트너십기관” 또는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지원금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“파트너십기관”이 이를 “월드비전”에게 배상하여야 한다. 이는 제6조 제1항의 경우에도 적용된다.

④ 사업 수행 또는 지원금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“월드비전”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“파트너십기관”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음이 판명된 경우 “파트너십기관”은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“월드비전”에게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2조(사업결과보고) “파트너십기관”은 반기(6개월)마다 “월드비전”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계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년마다 연보고서를 제출하고 3년마다 재계약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

제13조(평가) ① “월드비전”은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초선 조사, 연보고서, 재계약 성과보고서, 설문 및 인터뷰 등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“월드비전”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기관의 감사 또는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 “파트너십기관”

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면접 및 실사를 할 수 있으며, “파트너십기관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③ “월드비전”은 기초선 조사, 연보고서, 재계약 성과보고서, 설문 및 인터뷰 등의 평가결과를 “파트너십기관”에게 통보하여 “파트너십기관”이 사업 수행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.

④ “월드비전”은 평가결과에 따라 파트너십기관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⑤ “월드비전”은 평가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“파트너십기관”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중단, 기 지급한 지원금 환수, 일정기간 배분지원대상 제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4조(지원기관의 표시 및 홍보의무) ① “파트너십기관”은 사업에 관한 각종 표시물·홍보물 제작, 대외문서 발송 및 대언론 활동 등을 포함한 모든 대외적 표시에 있어서 반드시 “월드비전”의 파트너십기관임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“파트너십기관”은 제12조의 사업결과보고서에 “월드비전”의 파트너십기관임이 명시된 장면을 사진 등의 기록물로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“월드비전”과 “파트너십기관”은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관련자료(로그, 슬로건 등을 말한다)를 서로 제공하며, 활용 시 상대방의 내부 정책을 준수한다.

④ “파트너십기관”은 아동의 성장 및 추천 사례에 대해 “월드비전”과 적극 공유하고자 노력하며 “월드비전”은 사업홍보 취재(아동인터뷰, 사진, 동영상)를 할 경우 “파트너십기관” 및 가족의 동의를 구한 후 실시한다.

⑤ “월드비전”은 “파트너십기관”의 제1항 및 제4항에 대한 이행정도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15조(협조요청) ① “월드비전”과 “파트너십기관”은 사업과 관련하여 정보·자료 교환, 행사 개최 등 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서로의 참여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“월드비전”과 “파트너십기관”은 파트너십 협력기관으로 지역사회 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이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.

제16조(사업결과물의 소유 등) ① “월드비전”은 “파트너십기관”이 사업을 통하여 산출한 사업계획서, 사업결과보고서, 홍보물 및 자료집 등의 제작물 기타 제반 사업결과물에 대한 소유권, 저작권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(2차 저작물 사용 및 작성권 포함)를 지닌다.

② “파트너십기관”은 “월드비전”이 제공한 콘텐츠 및 제 1항의 사업결과물을 사업 수행외의 목적에 사용 및 재가공할 수 없으며, 필요시 “월드비전”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“파트너십기관”은 본 계약의 해지, 사업의 중단 기타 어떠한 사유를 막론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수취한 모든 정보 및 문서를 “월드비전”에 제출하고,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7조(아동승계) “파트너십기관”이 부득이 하게 월드비전 파트너십 사업을 수행 할 수 없게 될 경우 “월드비전”은 다른 기관을 지정 할 수 있으며 사업에 참여중인 아동을 승계한다.

제18조(아동관리) ① “파트너십기관”은 파트너십사업 대상인 모든 아동이 만 18세가 도래하여 자연종결에 이르기까지 책임지고 관리한다.

② “파트너십기관”은 파트너십사업 대상 아동을 관리하기 위해 “월드비전”이 제공하는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모니터링한다.

제19조(직원교육참여) ① “파트너십기관”의 월드비전 파트너십사업 담당자는 “월드비전”에서 진행되는 역량강화 교육에 참가해야 하며 직원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② “파트너십기관”의 내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아동사업 경력자를 우선 배정하도록 한다.

제20조(후원관리협조) “월드비전”의 후원자관리서비스는 후원아동 소개서신, 아동연례발달보고서, 성탄카드, 후원자방문, 선물/선물금(현금으로 보내는 선물) 감사서신이며 “파트너십기관”은 “월드비전”의 후원자관리서비스 가이드에 의거하여 준수한다.

제21조(아동 및 성인취약층 보호 규정 준수) “월드비전”과 파트너십관계를 맺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“파트너십기관”은 월드비전 아동 및 성인취약층 보호 규정에 근거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비롯해 별첨한 행동강령을 준수한다.

① “파트너십기관”은 “월드비전”이 제공하는 아동 및 성인취약층 보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
② “파트너십기관”은 협약기간 중 아동 및 성인취약층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위험이나 피해도 가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며, 이를 위반할 시 “월드비전”이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월드비전 아동 및 성인취약층 보호 규정에 근거한 절차에 따른 처분 및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.

③ “파트너십기관”은 “월드비전”과의 협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아동 및 성인취약층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피해 사실을 발견할 경우 즉시 “월드비전”에 알리고 그 대응에 협조한다.

④ “파트너십기관”은 아동 및 성인취약층과 대면하거나 이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을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.

제22조(보안) ① “월드비전”과 “파트너십기관”은 계약조건 및 내용을 준수할 것에 합의하고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 엄격히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② “월드비전”과 “파트너십기관”은 업무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얻은 상대방의 비밀에 속한 사항은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.

③ “파트너십기관”은 본 계약기간 전후에 불문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“월드비전”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민, 형사상의 책임

을 지며, “파트너십기관”의 고용인에 대하여도 “월드비전”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④ 본 조의 규정은 본 계약종료 후에도 유효하다.

제23조(기타사항) ① “파트너십기관”은 사업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첨한 사업수행 매뉴얼을 따라야 하며,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“월드비전”과 “파트너십기관”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②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한 관할은 “월드비전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③ 본 계약은 쌍방이 계약서에 합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④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“월드비전”과 “파트너십기관”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2년 월 일

“파트너십” (주 소)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22

(기관명) 김해시구산사회복지관

(대표자) 강미경



“월드비전” (주 소)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북2길 45

(기관명)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(월드비전 경남울산사업본부)

(대표자) 전광석 (인)

